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월 22일,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4.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9.28.) 상정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11.24.) 상정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02.) 상정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08.) 상정·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4.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위성곤의원)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사업의 조경식 제공사업에 한정하여 지역조합 및 중앙회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축공사사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선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태균)

개정안은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건설업의 범위에 조경사업 외에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2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략)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정사업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 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갓 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정사업 과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 에 수반되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 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이는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조합원 및 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법 제1조¹⁾에 부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²⁾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³⁾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조성사업 등⁴⁾을 실질적으로

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4)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건설 등”도 일정한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음.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이 건축사업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업역을 별도로 추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휴양림 조성 등에 부수하여 시행하던 건축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일부 예외를 설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즉, 이를 통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역조합과 중앙회에 산림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림조합의 건축사업 시행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림조합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5)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제4항6)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7)에 따라 조경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5)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6)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7) 제3조(조경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의 종류>

종합공사 시공 업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 업, 조경공사업 등 5개
전문공사 시공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 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29개

※ 위의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시공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제1항에서 2016년 2월 11일까지는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이 아닌 경우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⁸⁾, 같은 해 2월 12일부터는 그 경우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2018년 6월 27일부터는 그 면적 제한이 강화되어 200제곱미터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개정>

2016년 2월 11일까지 시행	법률 제15306호, 2017년 12월 26일 개정 (2016년 2월 12일부터 2018년 6월 26일 까지 시행)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 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 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 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

8)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13-0538/2014. 2. 12)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률 제15306호, 2017년 12월 26일 개정(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와 같이 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에 한정하여 등록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2016년 2월 12일 이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등에도 불구하고 산림사업에 부수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시공할 수 없게 된 것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경사업 외에 산림사업에 부수하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을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시행할 수 있는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의 신고를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2016년 2월까지 기존의 법률에 따라 휴양림 등의 조성에 부수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기술력 등 그 실질적인 자격 측면에서도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노하우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필요한 입법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건설업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산림청에서는 이해관계자 및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문 중 “200제곱미터”를 “연면적 200제곱미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위성곤)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대안반영폐기